[논 문]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이 민 규*

≪차 례≫

Ⅰ. 도 입
Ⅱ. 유코스 중재사건 소개
1. 배경
2. 유코스 중재사건에서 관할권에 관한 쟁점
3.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
Ⅲ. 투자중재판정과 뉴욕협약의 관계
1.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의 영향 및 전망
Ⅳ. 결 론

Ⅰ. 도 입

국제투자중재에서는 청구금액이나 판정금액이 거액이라는 것만으로 주목받는 일은 드물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8일에 유코스 사태를 둘러싼 중재사건의 본안판정에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법무법인 율촌 미국 변호사

1) 44건의 투자중재 사건의 청구금액을 종합한 결과, 평균 청구금액은 3.4억 달러, 평균 판정금액은 약 1.4백만 달러라고 발표한 연구가 있다. Susan D. Franck, *Empirically Evaluating Claims About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86 N.C. L. Rev. 1, 57-64 (2007).

의 판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자면 자그마치 50조원을 넘는 금액을 유코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판정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2] 이 배상금액은 유코스의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한 3건의 투자중재 사건(이하 '유코스 중재사건')[3]의 본안에 관한 판정의 주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사건이든 국제중재에서 판정 그 자체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국제중재,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중재 사건에서는 패소국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이라면 승인과 집행이라는 문제가 언제나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코스 중재사건에서도 판정이 내려진 직후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중재지인 네덜란드에 소재한 헤이그 지방법원(District Court of The Hague)에 유코스 중재사건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2016년 4월 20일에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때문에 유코스 중재사건의 미래, 특히 여러 국가에서 계속 중인 사건들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유코스 투자자들은 아마도 뉴욕협약(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터잡아 유코스 중재사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할 텐데,[4] 헤이그 지방법원의 취소판결로 인하여 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허용할지는 각국 법원의 재량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II절은 유코스 중재사건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다. II.1.에서는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코스 중재사건의 경제적.실체법적 배경을 소

---

2) 이 사안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한 Shearman & Sterling 측은 유코스 중재사건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Yukos: Largest Arbitral Award Ever,* Shearman & Sterling, http://www.shearman.com/en/services/practices/international-arbitration/yukos-arbitral-award. (2018.3.31. 현재)

3) 유코스 중재사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코스 및 그 자회사들이나 투자자들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갈등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이다. 세분화하자면, 유코스 중재사건은 다음 3건의 서로 다른 중재사건들로 구성되었다: I) Hulley Enterprises Limited (Cyprus) v. The Russian Federation, ii) Yukos Universal Limited (Isle of Man) v. The Russian Federation, 그리고 iii) Veteran Petroleum Limited (Cyprus) v. The Russian Federation.

4)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뉴욕협약을 체결한 150여개의 국가에서는 조약상 의무로 그럴 수밖에 없다.

개하고, II.2.에서는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을 특히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핵심쟁점으로 등장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뒤, II.3에서는 중재판정을 취소한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III절은 우선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각국 국내법절차에 어떤 어려움을 제기하는가를 뉴욕협약의 해석문제로 다룬 뒤, 이 논점을 한결 일반화하여 뉴욕협약에 터 잡아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현행법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Ⅱ. 유코스 중재사건 소개

1. 배경

유코스 중재사건의 법적논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이 사건의 실체법적 내지 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코스는 1993년에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OAO Yukos Oil Company'라는 이름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다. 그 뒤 1995년 사유화가 이루어지면서 Mikhail Khodorkovsky 등이 지배권을 장악했고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곧 러시아 내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로 자리잡았다.[5] 이런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의 경영진이나 투자자들 역시 많아지게 되었다.[6] 동시에 Khodorkovsky의 경영 아래에서 유코스의 재무보고 및 회계책임(accountability)도 점점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7] 그러던 중 2003년부터 유코스는 갑작스레 푸틴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당시 CEO였던 Khodorkovsky를 포함한 경영진의 체포를 시작으로 사기나 탈세 혐의 등에 대한 형사절차 및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270억

---

5) Cody Olson,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22 Am. Rev. Int'l Arb. 711, 713 (2011).

6) *Id.*

7) Dmitry Gololobov, *The Yukos Money Laundering Case: A Never-Ending Story,* 28 Mich. J. Int'l L. 711, 713 (2007).

달러를 소급과세로 부과처분[8]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고작 몇 년 만에 몰락하게 되었다.[9] 러시아 정부는 형사절차, 다른 대형 정유회사와의 합병 취소, 부당한 세금 추징, 자산압류, 면허 취소 협박 등에 뒤이어 유코스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10] 한 때 러시아 최대의 정유회사였던 유코스가 몰락까지 이르는 데에는 무려 5백 건이 넘는 소송이 있었다.[11]

위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로 유코스는 2006년에 파산했고 남은 자산은 전부 러시아 국영기업들에게 매각되었으며, 2007년 이후로는 유코스라는 기업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12]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분명하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푸틴 정부가 단순히 유코스를 다시 국영화하고 싶었다는 주장도 있지만[13] Khodorkovsky가 푸틴의 정적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14] 실제로 Khodorkovsky는 푸틴의 정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과 협상을 하여 러시아 내에서 석유를 독점하고 있던 러시아 정부를 위협했다.[15] 이유를 뚜렷이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유코스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사라져버리는 비극적인 결과가 빚어졌다.[16]

---

8) 러시아 정부는 2003년에만 유코스에게 무려 20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처분하였다. *Id.*

9) Paul B. Stephan, *Taxation and Expropriation－The Destruction of the Yukos Oil Empire,* 35 Hous. J. Int'l L. 1, 19 (2013).

10) Yukos Universal Limited (Isle of Man) v. Russ., PCA Case No. AA 227,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Nov. 30, 2009), https://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910.pdf, at 13-18. (2018.3.31. 현재)

11) Gololobov, *supra* note 7, at 714.

12) Olson, *supra* note 5, at 714.

13) Id.; Stephan, *supra* note 9.

14) Alex M. Niebruegg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The Yukos Arbitration and the Future Place of Provisional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Law,* 8 Chi. J. Int'l L. 355, 363 (2007).

15) Simon Shuster, *Why a Win in a Dutch Court Is Making Vladimir Putin So Happy*, Time (Apr. 21, 2016), http://time.com/4301475/russia-appeal-case-yukos-the-hague/.(2018.3.31. 현재)

16) *See* Stephan, *supra* note 9, at 4 ("[a]t the end of the day, Yukos ceased to exist as a legal entity, a great energy empire ended up in government hands, and the Yukos shareholders (many of whom were foreign portfolio investors, not oligarchs and their minions) received nothing in return").

2006년 유코스의 파산 이후 러시아 내에 있던 유코스의 자산은 대부분 압수되었다. 그러나 유코스의 해외 자산에 관해서는 분쟁이 생겼고 러시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반격이 계속되었다.[17]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유코스의 자산이나 유코스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 정부의 온갖 처분[18]에 관해 소송이나 중재가 시작되었으며, 이 논문의 주제인 유코스 중재사건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물론 지금도,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유코스 중재사건 외에도 수많은 법적분쟁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19] 이 수많은 사건 중에서 본 유코스 중재사건을 콕 집어서 다루는 이유는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도 있지만, 법학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뉴욕협약의 의의 및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 및 실무적 의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대상인 본 유코스 중재사건은 유코스의 해외 자회사 가운데 3개사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한 3건의 중재사건들로, 2014년에 동일한 내용의 중재판정이 3개 내려졌다. 중재신청의 법적 기반은 유코스의 몰락 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다자조약인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이하 'ECT')이다. ECT는 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를 세우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체결되었고 1998년 4월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다자 조약으로[20] 현재까지 50개가 넘는 국가들이 가입한 가장 포괄적인 다자간 투자협약이다.[21] 일각에서는 에너지가 풍부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공급의 경로를 다양화하려

17) *Id.* at 27.

18)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역시 러시아 정부의 행위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19) Yelena Burova, *Round-Up of Investment Arbitrations Against CIS States: Recent Developments,* CIS Arbitration Forum (Mar. 21, 2017), http://www.cisarbitration.com/2017/03/21/round-up-of-investment-arbitrations-against-cis-states-recent-developments.(2018.3.31.현재)

20) 현재까지 총 54개국이 ECT에 서명하거나 체결했으며, 그 내용은 특히 투자자의 보호, 차별이 없는 대우, 분쟁해결,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집중하고 있다. The Energy Charter Treaty, http://www.energycharter.org/process/energy-charter-treaty-1994/energy-charter-treaty.(2018.3.31. 현재)

21) Lena Serhan, *Arbitration Unbound: How the Yukos Oil Decision Yields Uncertainty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95 Tex. L. Rev. 101, 103 (2016).

는 서유럽 국가들의 의도가 서로 맞아 ECT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있다.[22] 러시아는 ECT를 체결하고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바로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결국은 유코스 중재사건이 제기된 후인 2009년 10월 18일에 잠정적용마저 철회하였다. 이 결정이 유코스 중재사건의 여파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있다.[23]

2. 유코스 중재사건의 관할권 쟁점

2005년에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ECT에 들어 있는 중재조항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신청했다. 핵심적인 청구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나 유코스의 경영진에 대한 형사절차들이 ECT 제10.1조에 따라 자신들의 투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의무와 제13조의 수용(expropriation)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24] 본안에 들어가기 위한 선결 제소요건 문제로 과연 유코스 중재사건의 판정부에 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관련 규정은 ECT의 잠정적용에 관한 제45조(1)과 분쟁해결절차, 즉 중재합의에 관한 조항인 제26조였다. 우선 제45조(1)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25]

"Each signatory agrees to apply this Treaty provisionally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for such signa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to the extent that such provisional application is not inconsistent with its constitution, laws or regulations."

---

22) Patricia Nacimiento, *The Energy Charter Treaty,* in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view 243, 244 (Bart Legum ed., 2017).

23) *Russia's withdrawal from the Energy Charter Treaty,* Norton Rose Fulbright (Aug. 2009),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22691/russias-withdrawal-from-the-energy-charter-treaty. (2018.3.31. 현재)

24) Yukos Universal Limited (Isle of Man) v. Russ., PCA Case No. AA 227, Final Award, (Jul. 18, 2014), https://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3279.pdf, at 30-32.(2018. 3.31. 현재)

25) The Energy Charter (1994), art 45(1), 34 ILM 360, 409 (1995) ("ECT").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코스 중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러시아는 ECT의 잠정적용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유코스 중재사건이 계속 진행된 것은, 러시아의 잠정적용 철회 전에 이미 이루어진 투자는 ECT 제45조(3)에 의해 철회 이후에도 여전히 ECT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26] 따라서 유코스 중재사건을 포함하여 199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에 관한 중재사건은 러시아의 철회와 무관하게 ECT의 내용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27]

ECT 제26조는 한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i) 체약국의 국내법원, (ii) 양측의 합의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혹은 (iii)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중재를 택할 시에는 다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를 통한 투자중재,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한 임시기관을 통한 중재(ad hoc arbitration), 혹은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절차를 통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28] 유코스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한 임시기관을 통한 중재로 진행되었다.[29]

관할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재요건 단계의 핵심 쟁점은 결국 ECT 제45조의 적용단위 문제였다.[30]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제45조의 의미는, ECT의 개개의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그런 조항들이 각 국가의 헌법, 법률, 그리고 규정과 충

---

26) *Id.* art 45(b)(3).
27) Olson, *supra* note 5, at 723.
28) ECT, *supra* note 25, art 26.
29) 러시아는 현재까지 ICSID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30) 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 임아영, 『에너지헌장조약(ECT)의 잠정적용과 국제투자협정중재에의 동의: 헤이그 법원의 Yukos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29호, 법무부, 2016; Peter C. Laidlaw,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Energy Charter As Seen in the Yukos Dispute,* 52 Santa Clara. L. Rev. 655 (2012); Niebruegge, supra note 13; Borja Alvarez Sanz, The Yukos Saga Reloaded: *Further Developments in the Interplay Between Domestic Legislations and Provisionally Applied Treaties,* 49 N.Y.U. J. Int'l L. & Pol. 587 (2017).

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체약국들이 그런 개개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31] 즉 특정한 ECT 조항이 러시아의 국내법이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그런 조항은 잠정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제26조의 중재조항에 관련하여, 러시아 법에서는 해외 투자자가 러시아 정부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제기하는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의 소관으로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본안전 항변이었다. ECT 제26조는 러시아의 법률에 어긋나고 애초에 잠정적용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재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코스의 투자자들에게 중재신청을 낼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유코스의 투자자들은 제45조에서 말하는 잠정적용의 단위는 ECT의 각 조항이 아니라 ECT의 내용 전체라고 주장했다. ECT의 체결이 각 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규정들과 충돌하지 않는 한 ECT 전체를 잠정적용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즉 ECT 전체를 놓고 잠적적용 하든가 말든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논거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해석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ECT 그 자체에 없다는 점과 ECT의 협상기록이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해석과 일치한다는 점 등이다.[32] 결국 ECT의 내용 전체를 놓고 볼 때 잠정적용이 러시아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규정들과 충돌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26조를 포함하여 ECT의 내용 전체가 잠정적용되어 러시아를 구속한다는 주장이었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양 당사자들의 입장은 즉, (i) ECT 내용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러시아의 헌법과 법 그리고 규정들과 충돌하는지를 따져서 잠정적용 여부를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로 따저야 한다는 접근방법과, (ii) ECT의 조항 하나하나를 단위로 놓고 각 조항이 러시아의 헌법과 법 그리고 규정들을 충돌하는지를 따져서 잠정적용 여부를 건건 또는 '조각 조각'('piecemeal') 따져야 한다는 접근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33]

---

31) Interim Award, *supra* note 10, at 107-108.
32) *Id.* at 109-110.

2009년 11월 30일 관할권과 제소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중간판정(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에서, 중재판정부는 ECT 제46조(1)의 해석상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잠정적용이라는 원칙 자체에 러시아의 헌법, 법률, 그리고 규정이라는 러시아 국내법과 충돌이 없고, 따라서 ECT의 내용 전체가 잠정적용된다는 결론이었다.[34] 그리하여 일단 본안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러시아가 유코스를 상대로 행한 행위들의 성격을 봤을 때 본안에서는 정황상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는 본안에서 러시아 정부의 행위들은 유코스를 파산시키고 가치가 큰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ECT 제13조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35] 이에 따라 2014년 7월 18일에 본안에 관한 종국적 중재판정으로, 러시아 정부는 유코스의 투자자들에게 3건의 사건들을 합쳐 총 50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자국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중재판정을 러시아가 순순히 따를 리는 없었다. 러시아는 유코스 중재사건의 중재지인 네덜란드에 소재한 헤이그 지방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2016년 4월에 헤이그 지방법원은 유코스 중재사건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6]

3.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

유코스 중재판정이 나오자 러시아 정부는 2014년 11월 10일 헤이그 지방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으나,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의 궁극적 쟁점 역시 유코스 중재사건과 마찬가지로 제45조에 따른 잠정적용의 단위였고[37] 판

33) Sanz, *supra* note 30, at 593-594.
34) Interim Award, *supra* note 10, at 146.
35) 중재판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ECT 제13조를 위반한 이상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어 제10.1조 위반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Final Award, *supra* note 24, at 497-498.
36) 헤이그 지방법원은 유코스 중재사건을 구성한 3건의 사건들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판결문의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The Hague District Court, Judgment of 20 April 2016, C/09/477160/ HA ZA 15-1, https://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7258.pdf.(2018.3.31. 현재)

결이 나온 것은 소 제기 이후 한참 뒤인 2016년 4월 20일이었다.

제소요건에 관한 중간판정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접근방식을 택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헤이그 지방법원은 러시아의 주장을 따라 조문별로 건건 잠적적용 여부를 정하는 접근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헤이그 지방법원은 러시아 국내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분쟁을 중재절차에 회부할 근거가 없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중간판정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ECT의 조항들과 러시아 국내법 사이의 '충돌'이란 개념을 달리 해석한 결과였다. 중재판정에서는 러시아 국내법이 명시적으로 ECT의 조항들을 금지해야만 충돌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ECT의 조항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러시아 국내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충돌이 있다고 보았다.[38]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 국내법(1991 Law on Foreign Investment의 제9조)에서 공법에 관한 분쟁은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에 우선하는 조약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중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39] 결국 제45조(1)에 따라 러시아 국내법과 ECT의 조항들 사이에 충돌이 있고 러시아가 제45조(1)을 잠정적용하기로 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유코스 중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중재판정부에 없다고 보면서 법원은 유코스 중재사건의 판정을 취소했다.

아래에서는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의 의의를 뉴욕협약 아래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련하여 살펴본다.

---

37) Nacimiento, *supra* note 22, at 249.
38) George A. Berman, *The Yukos Annulment: Answered and Unanswered Questions,* 27 Am. Rev. Int'l Arb. 1, 8-9 (2016).
39) *Id.* at 9-10.

Ⅲ. 투자중재판정과 뉴욕협약의 관계

1.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헤이그 지방법원 소송은 둘째 치고 왜 유코스 투자자들은 2014년에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자그마치 500억 달러라는 금액을 판정 받고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결국은 몇 년 만에 내려진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승소판정이라는 법적지위 자체마저 오히려 불확실하게 된 것일까? 상사중재와 마찬가지로, 투자중재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중재판정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통해 승소금액을 받는 것인 만큼,[40] 판정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금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상사중재나 마찬가지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중재지 관할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면,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국내법원의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취소의 소가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승인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다.[41] 나아가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서는 일반적인 상사중재와 다른 몇 가지 한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난관은 주권면제라는 항변이다. 근본적으로 투자중재라는 제도의 취지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틀에서는 투자자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국제법원에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이었다.[42] 그렇게 본다면 피소국이 투자중재를 통해 투자자와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규정을 투자협정에 이미 두고 있는 이상 다시 주권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모순

---

40) Jieying Ding, *Enforce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Law: History, Assessment, and Proposed Solutions*, 47 Geo. J. Int'l L. 1137, 1146 (2016) ("[r]eceiving an award is not the end game for foreign investors; it is collecting payment through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underlies their ultimate goal").

41)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551면.

42) 본래 ICSID 중재절차는 그 목적을 위해 1965년에 체결된 ICSID 협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Ding. supra note 40, at 1139-1140.

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중재 절차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소는 그 판단기관이 다르며 원칙적으로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다. 투자중재절차 자체에 동의를 하는 것과 피소국이 자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자국의 자산이나 행동을 놓고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43]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중재절차에서 승소한 후 어떤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할 경우, 패소국은 주권면제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주권면제 여부는 해당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법정지법)에 따라 결정된다.[44] 이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승소를 한 경우에도 투자중재판정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45]

패소국이 주권면제를 근거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툰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안이 있으나, 투자중재절차의 승인과 집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은 현 상황에서는 결국 없다. 가능한 주장으로는 우선 중재합의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해석하여, 어느 국가가 투자중재절차에 동의한 이상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다.[46] 다른 방안으로는 해당 국가가 주권면제를 포기(waive)한다는 동의를 미리 받아두거나 판정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자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47] 패소국이 승소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언론전을 펼치는 방안도 있다.[48]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

43) *Id.* at 1147; Andrea K. Bjorklund, *Sovereign Immunity as a Barrier to the Enforcement of Investor-State Arbitral Awards: The Re-Politic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21 Am. Rev. Int'l Arb. 211, 222 (2011); 석광현, 앞의 책, 47면.

44) *Id.* at 212.

45) *Id.* at 215.

46) *Id.* at 241.

47) Simon Greenberg, Christopher Kee, & J. Romesh Weeraman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Asia-Pacific Perspective 476 (2011).

희박해 보인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패소국의 '상업적'(commercial)인 자산을 찾고 그것에 대해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면제에 관한 정설은 주권면제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제한적인 면제설이다.[49]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상업적인 자산에는 주권면제의 효력이 집행단계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해볼 만하며,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있다.[50]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투자중재는 일반 상사중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사중재의 경우 다양한 중재기관이 있듯이[51] 투자중재의 종류 역시 크게는 ICSID 중재와 유엔국제 통상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의 규칙에 따른 중재로 나눌 수 있다.

ICSID는 1965년에 체결된 ICSID 협약을 통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일부로 설립되었다. ICSID의 관할권은 당사자들이 속한 국가 중 하나 이상이 ICSID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생긴다.[52] 또한 ICSID 중재판정의 취소는 각 사건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고[53] 원칙적으로는 각 임시위원회만이 해당 중재판정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54] ICSID 협약은 체결국

48) Olson, *supra* note 5, at 728-729.

49) Bjorklund, *supra* note 43, at 225 ("[t]he restrictive theory of immunity – that sovereigns are only immune for their activities *qua* sovereign, and not for their activities *quo* commercial actor – is fairly widely accepted and is increasingly applied to execution immunity"); 석광현, 앞의 책, 52면.

50) *Id.* at 225-226.

51) 국제상업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52) 당사자들 중 하나만 ICSID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978년에 체결된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가 적용이 된다.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CSID, https://icsid.worldbank.org/en/Pages/icsiddocs/ICSID-Additional-Facility-Rules.aspx.(2018.3.31. 현재)

53)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 art 52(1), Mar. 18, 1965, 17 U.S.T. 1270, 575 U.N.T.S. 159 ("ICSID Rules").

54) 오원석, 김용일, 이기옥, 『ICSID 중재의 취소제도에 관한 제 고찰,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

에 중재판정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체의 집행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55] 구체적으로, ICSID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는 국내법원이 아니라 ICSID 내의 항소절차를 통해야 한다.[56] 결과적으로는 ICSID 중재판정취소 절차에 국내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으며,[57] 그런 면에서 국내법 체계로부터 독립한 주체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다.[58]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뉴욕협약보다는 ICSID 제도에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59]

ICSID 중재가 아닌 다른 투자중재 절차라면 뉴욕협약이 적용된다.[60] 뉴욕협약은 명시적으로 투자중재판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61] 그러나 투자중재판정 역시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62] ICSID 중재와 마찬가지로,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권면제에 관해서는 수소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법정지법)이 준거법이 된다.[63] 한편 뉴욕협약 제5조는 각 체결국의 국내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제5.1(e)조는 중재판정이 아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나 중재지에서 국내 법원에 의해

재학회, 2014, 16면.

55) Olson, *supra* note 5, at 720.

56) ICSID Rules, *supra* note 53, art 54; Ding, supra note 40, at 1143.

57) 강병근,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취소와 중재지 법원의 관할권 – OEPC v. Ecuador 사건』,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150면.

58) Sundra Rajoo, *Annul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in*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view 211, 212 (Bart Legum ed., 2017) ("[i]t is a fully autonomous procedure where arbitration is independent from any national legal system").

59) Bjorklund, *supra* note 43, at 216; Olson, *supra* note 5, at 725.

60) *Id.* at 217.

61) 뉴욕협약 제1.1조는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awards are sought and arising out of differences between persons, whether physical or legal"와 "arbitral awards not considered as domestic awards in the State where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sought"이라고만 명시하며 "arbitral award"이란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t 1.1, Jun. 10, 1958, 21 U.S.T. 2517, 330 U.N.T.S. 38 ("New York Convention").

62) Bjorklund, *supra* note 43, at 218.

63) *Id.* at 218-219.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법원이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4]

2.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의 영향 및 전망

유코스 중재사건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절차이므로 뉴욕협약이 적용된다.[65] 그 덕분에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코스 중재사건의 판정이 이론적으로 150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승인과 집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66]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불확실해졌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헤이그 중재판정의 법적효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불확실해진 것뿐이라는 점이다. 특정 중재판정이 중재지에서 취소되었다고 그 중재판정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대세적(對世的)으로 잃지는 않는다.[67] 뉴욕협약 아래에서는 어떤 중재판정을 중재지국의 법원이 취소했다고 해서, 집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된 다른 국가의 법원이 무조건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68] 실제로 뉴욕협약 제5.1(e)조는 승인과 집행의 거절에 대해 "shall" 대신 "may"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판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각국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각 국가의 법원에는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의무가 없으며[69] 오히려 제5.1(e)조에 따라 승인 및 집행 여부에 관해 재량을 가진

64)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New York Convention, *supra* note 61, art V.1(e).

65) 뉴욕협약 제3조 아래 각 체결국의 국내법원은 예외 조항인 제5조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체결국의 중재판정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Stephen T. Ostrowski and Yuval Shany, *Chromalloy: United States Law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t the Crossroads,* 73 N.Y.U. L. Rev. 1650, 1657-1658 (1998).

66) *Yukos: Largest Arbitral Award Ever*, supra note 2.

67) 중재지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Linda Silberman. The New York Convention After Fifty Years: Some Reflections on the Role of National Law, 38 Ga J. Int'l & Comp. L. 26, 28 (2009).*

68) Linda Silberman & Nathan Yaffe, *The US Approach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fter Set-Asides: The Impact of the Pemex Decision,* 40 Fordham J. Int'l L. 799, 800 (2017).

69) Silberman, *supra* note 67, at 27.

다.[70]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뉴욕협약에 따라서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재판정을 취소한 중재지국 법원의 판결은 뉴욕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른 것일 뿐이며, 그 효력 역시 그 나라의 영토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다.[7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과연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할 수 있을까? 결론은 법정지법마다 달라질 것이다. 상대적으로는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72]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세계 각국에서 승소금액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파리 항소법원(Paris Court of Appeals)은 헤이그 지방법원의 취소판결이 프랑스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73] 러시아 정부가 자발적으로 승소금액을 지불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이 과연 승소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74]

물론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유코스 사태가 종결될 일은 없어 보인다.[75] 한편으로는 본건 유코스 중재사건에 관련된 사안들 외에도 다른 형태와 다른 쟁점을 둘러싼 분쟁들 역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17년 8월에 나온 스위스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유코스 자회사중 하나인 Yukos Capital이 130억 달러 가량의 금액을 청구한 UNCITRAL 중재에서 러시아의 관할권 항

---

70) 석광현, 앞의 책, 551면.

71) 이 논리를 따른다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판단하는 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을 취소한 중재지의 국내법원의 결정을 먼저 승인해야 하며, 실제로 그런 사례도 3건이나 있다. Albert Jan Van den Berg, *Should the Setting Aside of the Arbitral Award be Abolished?,* 29 ICSID Rev. 1, 17-19 (2014).

72) *A Case of Winning the Battle and Losing the War: Yukos v Russian Federation*, DLA Piper (Jun. 9, 2016), https://www.dlapiper.com/~/media/Files/nsights/Publications/016/06/ukos_vs_ussian_Federation.pdf, at 5.(2018.3.31. 현재)

73) Caroline Simson, *French Court May Seek ECJ Guidance on $50B Yukos Awards,* Law 360 (Jun. 27, 2017), https://www.law360.com/articles/938786/french-court-may-seek-ecj-guidance-n-50b-yukos-awards.(2018.3.31. 현재)

74) Serhan, *supra* note 21, at 110.

75) *See Id.*

변을 배척한 중간판정이 2017년 1월에 나왔는데, 러시아가 스위스 법원에서 그 중간판정의 취소를 구했다. 스위스 대법원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아직 러시아의 관할권 관련 본안전 항변을 전부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판정의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정했다.[76] 이 사건은 유코스 중재사건 이후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제기된 여러 중재사건들 중 하나이다.[77]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헤이그 항소법원(The Hague Court of Appeal)이 다시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78] 2017년 1월에 헤이그 항소법원은 관할권에 관한 항변을 분리심리(bifurcate)하지는 않겠다고 결정해 소송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79]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유코스 중재사건의 청구금액이나 그 상징적 의의 등을 볼 때 패소한 측이 네덜란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소송들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대법원 심리까지 거칠 경우에는 유코스 중재사건의 종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 분명하다.[80] 또한 당장은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이 프랑스, 벨기에, 독일과 인도에서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헤이그 항소법원 항소절차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81]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적어도 아직까지는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이

---

76) *"Second wave" Yukos case to resume after Swiss ruling,* Global Arbitration Review (Aug. 8, 2017), http://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145402/-second-wave-yukos-caseto-resume-after-swiss-ruling.(2018.3.31. 현재)

77) *Id.*

78) 네덜란드의 법원 시스템은 11개의 지방법원, 4개의 항소법원, 그리고 하나의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judicial system,* de Rechtspraak, https://www.rechtspraak.nl/English. (2018.3.31. 현재)

79) Caroline Simson, *Dutch Court Will Not Split Yukos Appeal,* Law 360 (Jan. 23, 2017), https://www.law360.com/articles/883952/dutch-court-will-not-split-yukos-appeal.(2018.3.31.현재)

80) 임아영, 앞의 글, 27면.

81)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1월 23일에 프랑스 항소법원에서 유코스 중재사건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심리기일이 열렸다. The Yukos case: former shareholders lose their legal battle in France but continue the war, Lexology (Dec. 4, 2017),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7aa8338-cb37-4357-81d0-f118dd94531f.(2018.3.31. 현재)

다른 나라의 법원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상황이 크게 의아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언젠가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구속력 있는 최종판결을 내렸을 때에 다른 나라 법원들이 그 최종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지금부터 고민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ECT 제26조의 중재조항에 과연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다른 중재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82]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국가의 법원에 대한 기판력은 없지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Ⅳ.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ICSID 중재가 아니라 뉴욕협약에 따른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절차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다. 투자중재절차에서 패소국이 판정을 원만하게 이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83] 여태까지는 이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코스 중재사건처럼 패소국이 이행을 거부하고 나아가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국내법원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양측의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이 다룬 쟁점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고, 새로운 문제가 속속 생겨날 것이다.

특히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해 뉴욕협약 제5.1조(e)에 따라 각국법원이 재량을 가지는 이상, 유코스 중재사건처럼 중재지국 법원에서 해당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내법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에 관해 어느 정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입장

82) "Second wave," *supra* note 76.

83) Olson, *supra* note 5, at 727 ("[a] 2008 study suggests that states and state enterprises in the vast majority (approximately 90%) of cases comply with arbitral awards on a voluntary basis").

에서는 각국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주제는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적의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한 투자중재사건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역시 갈수록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84]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미리 연구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투자중재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난점에 대해서 명확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투고일 : 2018. 4. 12.	심사일 : 2018. 5. 11.	게재확정일 : 2018. 5. 14.

84) Joongi Kim, *A Bellwether to Korea's New Frontier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 Moscow Convention and Lee Jong Baek v. Kurgyz Republic,* 15 Pepp. Disp. Resol. L.J. 549, 557 (2015).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병근,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취소와 중재지 법원의 관할권 - OEPC v. Ecuador 사건』,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오원석, 김용일, 이기옥, 『ICSID 중재의 취소제도에 관한 제 고찰』,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임아영, 『에너지현장조약(ECT)의 잠정조약과 국제투자협정중재에의 동의: 헤이그 법원의 Yukos 중재판정 취소판결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29호, 법무부, 2016.

2. 국외문헌

A Case of Winning the Battle and Losing the War: Yukos v Russian Federation, DLA Piper (Jun. 9, 2016), https://www.dlapiper.com/~/media/Files/Insights/Publications/2016/06/Yukos_vs_Russian_Federation.pdf.

George A. Bermann, *The Yukos Annulment: Answered and Unanswered Questions,* 27 Am. Rev. Int'l. Arb. 1 (2016).

Andrea K. Bjorklund, *Sovereign Immunity as a Barrier to the Enforcement of Investor-State Arbitral Awards: The Re-Politic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21 Am. Rev. Int'l Arb. 211 (2011).

Yelena Burova, *Round-Up of Investment Arbitrations Against CIS States: Recent Developments,* CIS Arbitration Forum (Mar. 21, 2017), http://www.cisarbitration.com/2017/03/21/round-up-of-investment-arbitrations-against-cis-states-recent-development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t 1.1, Jun. 10, 1958, 21 U.S.T. 2517, 330 U.N.T.S. 38.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 arts 52(1), Mar. 18, 1965, 17 U.S.T. 1270, 575 U.N.T.S. 159.

Jieying Ding, *Enforce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Law: History, Assessment, and Proposed Solutions,* 47 Geo. J. Int'l L. 1137 (2016).

Susan D. Franck, *Empirically Evaluating Claims About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86 N.C. L. Rev. 1 (2007).

Dmitry Gololobov, *The Yukos Money Laundering Case: A Never-Ending Story,* 28 Mich. J. Int'l L. 711 (2007).

Simon Greenberg, Christopher Kee, & J. Romesh Weeraman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Asia-Pacific Perspective* (2011).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CSID, https://icsid.worldbank.org/en/Pages/icsiddocs/ICSID-Additional-Facility-Rules.aspx.

Joongi Kim, *A Bellwether to Korea's New Frontier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 Moscow Convention and Lee Jong Baek v. Kurgyz Republic,* 15 Pepp. Disp. Resol. L.J. 549 (2015).

Peter C. Laidlaw,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Energy Charter As Seen in the Yukos Dispute*, 52 Santa Clara L. Rev. 655 (2012).

Patricia Nacimiento, *The Energy Charter Treaty,* in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view (Bart Legum ed., 2017).

Alex M. Niebruegg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The Yukos Arbitration and the Future Place of Provisional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Law,* 8 Chi. J. Int'l L. 355 (2007).

Cody Olson,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22 Am. Rev. Int'l Arb. 711 (2011).

Stephen T. Ostrowski and Yuval Shany, *Chromalloy: United States Law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t the Crossroads,* 73 N.Y.U. L. Rev. 1650 (1998).

Sundra Rajoo, *Annul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in*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view 211 (Bart Legum ed., 2017).

Russia's withdrawal from the Energy Charter Treaty, Norton Rose Fulbright (Aug. 2009),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22691/russias-withdrawal-from-the-energy-charter-treaty.

Borja Alvarez Sanz, *The Yukos Saga Reloaded: Further Developments in the Interplay Between Domestic Legislations and Provisionally Applied Treaties,* 49 NYU J. Int'l L. & Pol. 587 (2017).

"*Second wave" Yukos case to resume after Swiss ruling,* Global Arbitration Review (Aug. 8, 2017), http://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145402/-second-wave-yukos-case-to-resume-after-swiss-ruling.

Lena Serhan, *Arbitration Unbound: How the Yukos Oil Decision Yields Uncertainty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95 Tex. L. Rev. 101 (2016).

Simon Shuster, *Why a Win in a Dutch Court Is Making Vladimir Putin So Happy,* Time (Apr. 21, 2016), http://time.com/4301475/russia-appeal-case-yukos-the-hague/.

Linda Silberman, *The New York Convention After Fifty Years: Some Reflections on the Role of National Law,* 38 Ga J. Int'l & Comp. L. 26 (2009).

Linda Silberman & Nathan Yaffe, *The US Approach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fter Set-Asides: The Impact of the Pemex Decision,* 40 Fordham J. Int'l L. 799 (2017).

Caroline Simson, *Dutch Court Will Not Split Yukos Appeal,* Law 360 (Jan.

23, 2017), https://www.law360.com/articles/883952/dutch-court-will-not-split-yukos-appeal.

_____, *French Court May Seek ECJ Guidance on $50B Yukos Awards,* Law 360 (Jun. 27, 2017), https://www.law360.com/articles/938786/french-court-may-seek-ecj-guidance-on-50b-yukos-awards.

Paul B. Stephan, *Taxation and Expropriation－The Destruction of the Yukos Empire,* 35 Hous. J. Int'l L. 1 (2013).

The Energy Charter (1994), 34 ILM 360, 409 (1995) ("ECT").

The Hague District Court, Judgment of 20 April 2016, C/09/477160/ HA ZA 15-1, https://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7258.pdf.

The Yukos case: former shareholders lose their legal battle in France but continue the war, Lexology (Dec. 4, 2017),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7aa8338-cb37-4357-81d0-f118dd94531f.

Albert Jan Van den Berg, *Should the Setting Aside of the Arbitral Award be Abolished?,* 29 ICSID Rev. 1 (2014).

Yukos: Largest Arbitral Award Ever, Shearman & Sterling, http://www.shearman.com/en/services/practices/international-arbitration/yukos-arbitral-award.

Yukos Universal Limited (Isle of Man) v. Russ., PCA Case No. AA 227, Final Award, (Jul. 18, 2014), https://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3279.pdf.

Yukos Universal Limited (Isle of Man) v. Russ., PCA Case No. AA 227,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Nov. 30, 2009), https://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0910.pdf.

<국문초록>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이 민 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투자중재는 일반 상사중재의 경우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논점을 제기한다. 예를 들자면, 투자중재절차에서 승소한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권면제라는 1차적인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이때에는 각 국가의 국내법상 주권면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론적으로 사용가능한 몇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통해 이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패소국이 각 투자중재판정에 적용된 중재규칙이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패소국이 뉴욕협약이 명시하는 여러 가지 사유중 하나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한때는 러시아의 거대 정유회사였던 유코스를 둘러싼 소위 '유코스 중재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4월 20일에 유코스 중재사건의 판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유코스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50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2014년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중재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러시아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은 해당 중재판정의 미래

및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국가의 법원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승인과 집행의 여부에 관해 재량을 가진다. 실제로 유코스 중재사건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네덜란드 외의 다른 국가들에서 유코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고 있다.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유코스 중재사건 및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 및 분석한 뒤, 뉴욕협약 아래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주제어: 유코스, 투자중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뉴욕협약, 주권면제

<Abstract>

Issues with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As Revealed Through the Yukos Arbitration

Lee, Min-Kyu

An investment arbitration raises questions unique to it compared to ordinary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For instance, an investor who has prevailed in an investment arbitration procedure must first overcome a preliminary hurdle in the issue of sovereign immunity in order to actually receive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hat is relevant is the notion of sovereign immunity as it is understood under the domestic laws of each state. However, even if an investor overcomes the issue of sovereign immunity through one of several methods which in theory could be relied upon, the losing state could then argue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ncerned investment arbitration award must be refused in accordance with certain grounds provided by the arbitral rules or domestic laws applicable to each investment arbitration award. Additionally, where the New York Convention is applicable, the losing state could seek to annul the arbitral award based on one of the grounds provided by the New York Convention.

One example which accurately shows this problem is the so-called "Yukos Arbitration" regarding the now defunct corporation which was

once a Russian oil giant. With respect to this case, on April 20, 2016,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annulled the award rendered by the tribunal of the Yukos Arbitration that ordered the Russian Federation to pay $50 billion to foreign investors of Yukos. The decision by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explicitly reveals this issue with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Indeed, the investors of the concerned arbitration proceeding have yet to receive anything at all from the Russian Federation despite having received an arbitral award for such an astronomical amount back in 2014. Here,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has added further uncertainty to the future and outlook of the concerned arbitral award. At the same time, however,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n arbitral award does not automatically lose its effectiveness in another jurisdiction simply because it has been annulled at its place of arbitration. Rather, the courts of other states are given discretion over whether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awar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concerned state. As a matter of fact, the investors of the Yukos Arbitration continue to seek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at hand in jurisdictions other than the Netherlands. As such, one cannot help but become curious about how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will be received elsewhere.

After briefly introducing and analyzing both the Yukos Arbitr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as a final note this paper questions fundamentally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Key Word: Yukos, investment arbitra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 sovereign immunity